

의안번호	제 2015 - 19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5. 1. (제64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위원회 개관	1
1. 설립 배경 및 연혁	1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3
3. 조직	3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5
II. 제4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6
1.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	6
2. 제4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6
3. 제4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7
III. 제5기 양형위원회 구성	16
1. 양형위원회 위원	16
2. 전문위원	17
3. 자문위원	18
IV. 2015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19
1. 제5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 지원	19
2. 『2015 양형기준』 책자 발간·배포	19
3. 『2014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19
V.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20

1. 개요	20
2. 관련 규정	20
3. 의견수렴 계획	20
4. 시행 일정	22



I. 양형위원회 개관

1. 설립배경 및 연혁

가. 설립 배경

○ 2004. 12. 사법개혁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 건의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07. 1. 26.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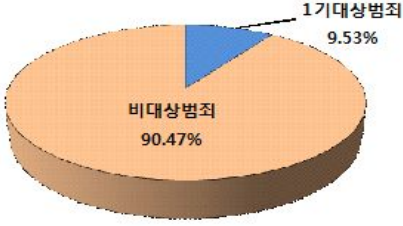
○ 개정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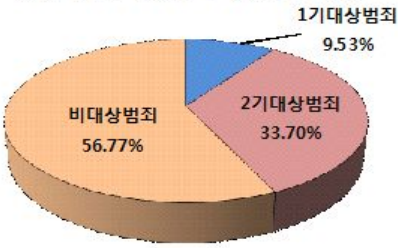
-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
- 2009. 4. 26.까지 최초 양형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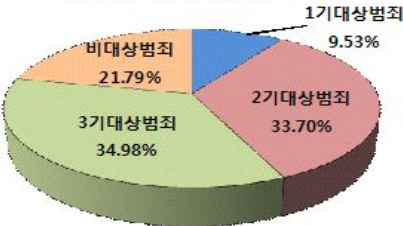
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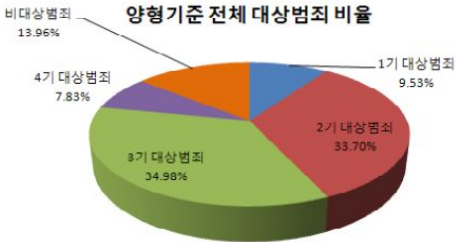
○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2007. 4. 27. 시행되어 같은 날 양형위원회 출범

○ 출범 이후 활동 경과

【1기 양형위원회】	- 2007. 4. 27. ~ 2009. 4. 26. - 위원장 : 김석수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	- 2009. 4. 24. 최종 의결 - 2009. 7. 1. 시행
양형기준 제1기 대상범죄 비율  비대상범죄 90.47% 1기대상범죄 9.53% ※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9.53%	

【2기 양형위원회】		- 2009. 4. 27. ~ 2011. 4. 26. - 위원장 이규홍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0. 6. 29. 의결 • 2010. 7. 15. 시행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 2011. 3. 21. 의결 • 2011. 7. 1. 시행	
• 살인범죄, 강도범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개정 형법 내용 반영]	• 2011. 3. 21. 의결 • 2011. 4. 15. 시행	
양형기준 1기 및 2기 대상범죄 비율  ※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43.23%		

【3기 양형위원회】		- 2011. 4. 27. ~ 2013. 4. 26. - 위원장 이기수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2. 1. 30. 의결 • 2012. 3. 16. 시행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 2012. 6. 18. 의결 • 2012. 7. 1. 시행	
• 선거범죄 양형기준	• 2012. 8. 20. 의결 • 2012. 9. 1. 시행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 2013. 2. 4. 의결 • 2013. 7. 1. 시행	
• 살인범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3. 4. 22. 의결 • 2013. 5. 15. 살인범죄 시행 • 2013. 6. 19. 성범죄 시행	
양형기준 전체 대상범죄 비율  ※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78.21%		

【4기 양형위원회】	- 2013. 4. 27. ~ 2015. 4. 26. - 위원장 전효숙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약취·유인 수정 양형기준 시행 : 2014. 10. 1.)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예정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2015. 4. 13. 의결 2015. 5. 15. 시행 예정												
 양형기준 전체 대상범죄 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범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비대상범죄</td> <td>13.96%</td> </tr> <tr> <td>1기 대상범죄</td> <td>9.53%</td> </tr> <tr> <td>2기 대상범죄</td> <td>33.70%</td> </tr> <tr> <td>3기 대상범죄</td> <td>34.98%</td> </tr> <tr> <td>4기 대상범죄</td> <td>7.83%</td> </tr> </tbody> </table> ※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86.04%		대상범죄	비율	비대상범죄	13.96%	1기 대상범죄	9.53%	2기 대상범죄	33.70%	3기 대상범죄	34.98%	4기 대상범죄	7.83%
대상범죄	비율												
비대상범죄	13.96%												
1기 대상범죄	9.53%												
2기 대상범죄	33.70%												
3기 대상범죄	34.98%												
4기 대상범죄	7.83%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하는 의결기관
- 대법원 소속의 독립 위원회

3. 조직

가. 위원장 및 위원

- 대법원장이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임
- 위원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검사 2인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2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각 위촉)

나.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둔
-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최대 15인까지 둘 수 있으며, 임기 1년(연임 가능)
- 현재 법관 3인(수석전문위원 1인 포함), 검사 2인, 변호사 2인,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6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

다. 운영지원단

- 양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9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단 설치
- 운영지원단은 운영지원단장(판사)과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및 통계분석과로 구성
- 법원서기관 1명, 법원사무관 9명을 포함한 총 29명(15명의 양형자료분석관 포함)의 일반직원을 배치(통계직렬 실무관 2명 포함)

라. 자문위원

-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현재 11명)

마. 조직도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단 계		담당	내 용
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2	양형기준안 의결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			
3	공청회 및 의견조희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희 절차를 진행
↓			
4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희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
↓			
5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II. 제4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1.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

- 2013. 4. 27. 출범하여 2013. 5. 7.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위촉·임명장 수여식 시행 후 공식일정 시작

2. 제4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 위원 명단 】

【2015. 4. 기준】

지위	성명	생년월일	기수	비고
위원장	전 효 숙	1951. 2. 28.	7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법관)	조 병 현	1955. 3. 2.	1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 용 대	1960. 12. 20.	17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조 경 란	1960. 12. 16.	14기	청주지방법원장
	이 규 진	1962. 4. 7.	18기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김 현 웅	1959. 5. 4.	16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유 상 범	1966. 6. 4.	21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박 상 훈	1962. 10. 20.	16기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 광 수	1961. 12. 31.	17기	변호사
위원 (교수)	오 영 근	1956. 4. 25.	해당 없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 보 학	1962. 3. 23.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학식·경험)	이 화 섭	1956. 2. 2.	"	전 KBS 보도본부장
	유 성 희	1968. 6. 16.	"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 현 기준일자 전 4기 양형위원 명단

: 이진만(상임위원), 국민수, 이건리, 여상훈, 임정혁, 강경필 위원

3. 제4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가. 위원회 회의 등 개최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15회, 공청회 3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23회,
자문위원 회의 2회 개최

(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15회)

차 수	일 시	안 건
49차	2013. 5. 7.	-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식 - 양형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등
50차	2013. 6. 24.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의결
51차	2013. 9. 9.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52차	2013. 10. 25.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보고
53차	2013. 12. 23.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의결
54차	2014. 1. 20.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 수정안 의결
55차	2014. 3. 31.	-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의결 -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의결 -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의결 -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3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56차	2014. 6. 9.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2013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차 수	일 시	안 건
57차	2014. 7. 21.	- 장물, 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검토Ⅱ) -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설정 방안 심의
58차	2014. 9. 15.	- 업무방해, 손괴, 장물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 게임관련법위반죄,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설정 방안 심의(검토Ⅱ)
59차	2014. 11. 3.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60차	2014. 11. 21.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 11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의결
61차	2015. 2.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의결
62차	2015. 3. 2.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2014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63차	2015. 4. 13.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 공청회

회차	일 시	안 건
제9차 공청회	2014. 2. 17.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제10차 공청회	2014. 12. 15.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제11차 공청회	2014. 12. 22.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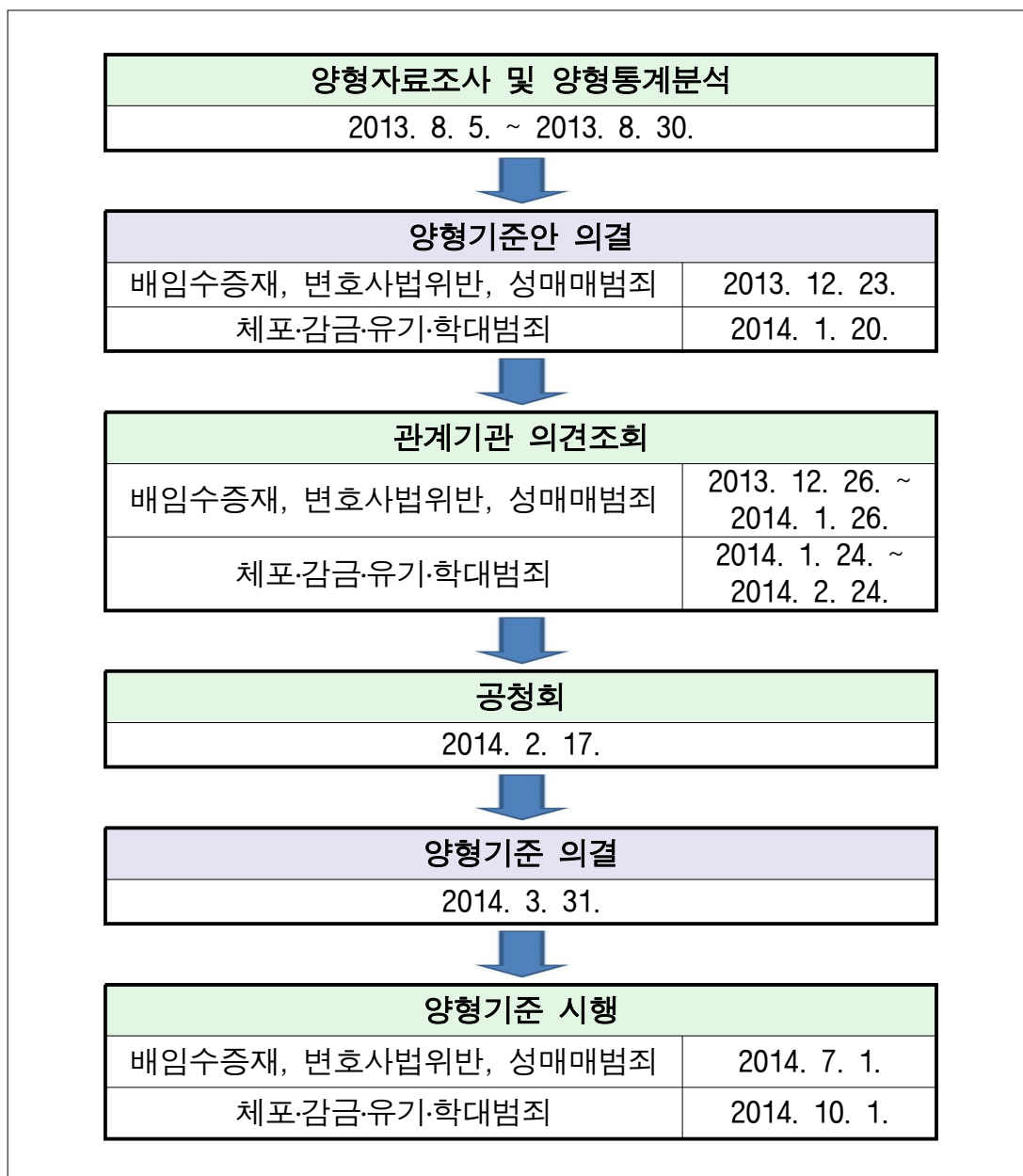
나. 양형기준의 설정

(1)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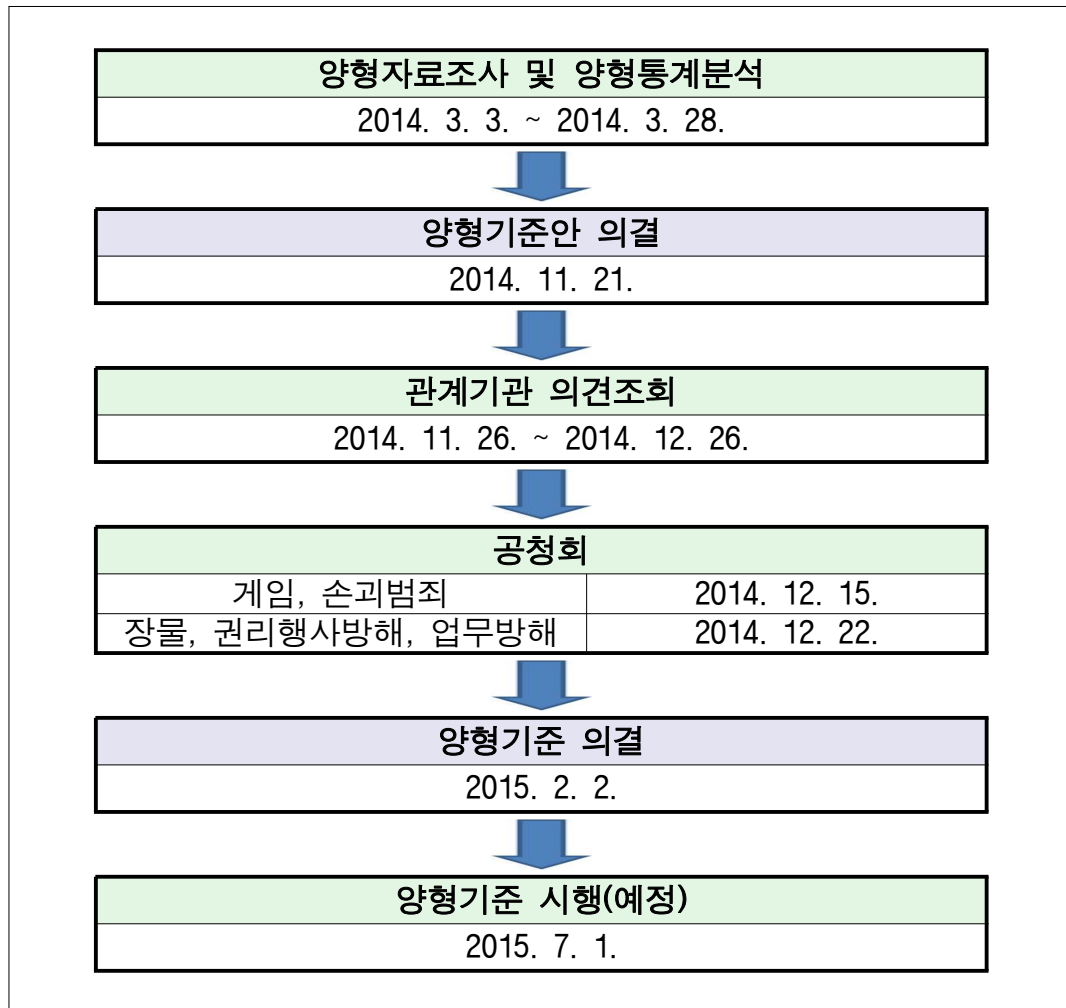
○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의결(2013. 6. 24. 제50차 회의)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권리행사 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범죄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2) 제4기 설정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가) 배임수증재범죄

- 대표적인 민간부분 부패범죄로서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하여 금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
-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액이 큰 구간에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종전 실무례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나) 변호사법위반범죄

- 대표적인 부패범죄인 변호사법위반범죄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중전 실무례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특히,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나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학대범죄에 대한 객관적 처벌기준 마련
- 2014. 1. 28.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객관적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기준 마련
- 체포·감금범죄 유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음주로 인한 감경을 제한

(라) 성매매범죄

- 기업형 성매매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여 성매매알선을 비롯한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객관적 처벌기준을 마련
-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하여는 관련 아동·청소년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권고 형량범

위를 규범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종전 실무례보다 더욱 엄정한 처벌 기준 마련

(마) 장물범죄

- 재산범죄 전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절도나 강도 등 다른 재산범죄를 유발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중한 유형 등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함

(바) 손괴범죄

-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손상범행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일반 재물손괴보다 높은 형량범위 권고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가중인자로 반영함

(사) 권리행사방해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등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와 경매·입찰방해에 대하여, 죄질이 중한 유형에서는 권고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종전 실무례보다 엄정한 처벌 기준 마련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자) 사행성·게임물범죄

-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

회적 피해가 큰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처벌기준 마련

- 직관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사행성·게임물 범죄들을 구성요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5개 대유형으로 분류
- 범죄수익이나 영업규모가 큰 범행 유형에 대하여 더 높은 형량범위 권고

다. 양형기준의 수정

(1)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2차 수정

-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변화된 법감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 6. 24. 제50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약취·유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

○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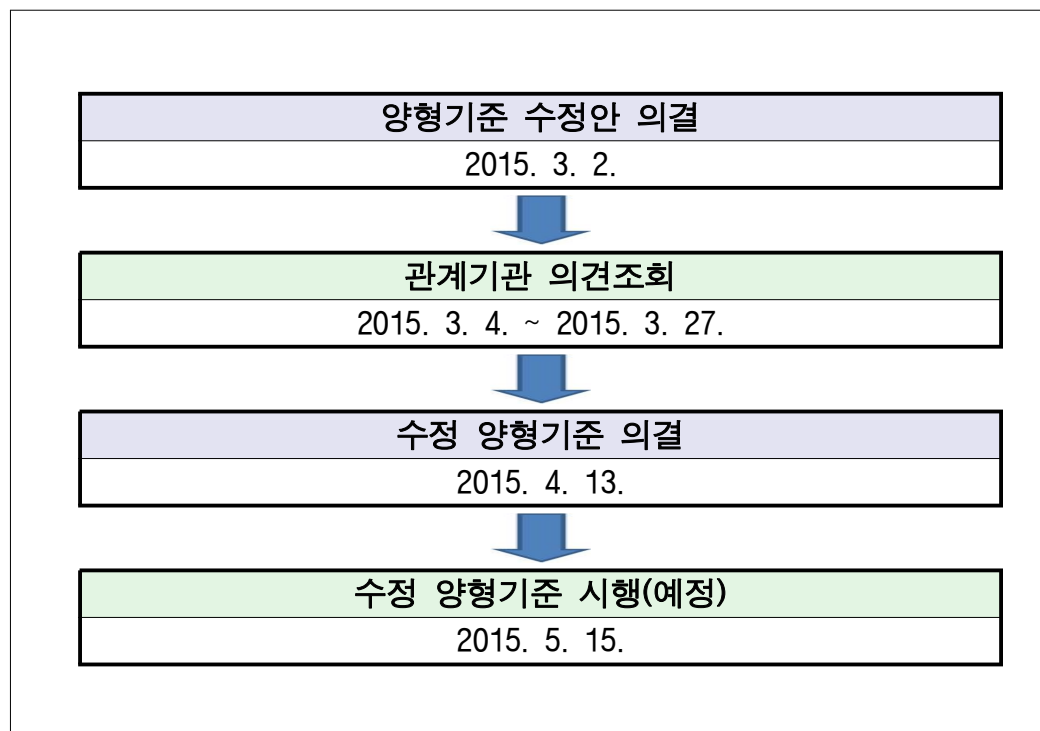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로의 범죄군 명칭 변경

- 형법 및 특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조정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2)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 식품범죄 : 적용 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되거나 구성요건이 신설되었고, 종전의 법정형에도 일부 변동이 있었음
- 마약범죄 : 2011.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 개정(2012. 6. 8. 시행)되는 등 마약범죄 관련 법률이 상당 부분 개정됨
- 위와 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기존의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설정 등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로 함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 식품·보건범죄
 -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각 구성요건과 적용법조 변경
 - 상습범, 5년 이내 재범 등 개정 법률에 따른 특별가중인자 추가
- 마약범죄
 -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각 구성요건과 적용법조 변경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수수’를 ‘매매·알선 등’ 유형의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되,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Ⅲ. 제5기 양형위원회 구성

1. 양형위원회 위원

【2015. 4. 27. 현재】

지 위	성 명	생 년 월 일	기 수	비 고
위원장	이 진 강	1943. 08.25.	사법시험5회	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위원 (법관)	심 상 철	1957. 11. 07.	연수원 12기	서울고등법원장
	이 창 형	1962. 02. 17.	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 정 화	1965. 10. 03.	연수원 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규 진 (상임위원)	1962. 04. 07.	연수원 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김 현 웅	1959. 05. 04.	연수원 16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유 상 범	1966. 06. 04.	연수원 21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최 재 혁	1967. 09. 28.	연수원 21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채 명 성	1978. 12. 16.	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원 (교수)	박 광 민	1956. 04. 20.	해당 없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현 미	1959. 09. 18.	해당 없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학식·경험)	김 장 겸	1961. 05. 08.	해당 없음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차 병 직	1959. 03. 03.	연수원 15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 전문위원

【2015. 4. 27. 현재】

구분	성명	기수	소속	직위(직급)	최초 위촉일
법원	이재권 (수석전문위원)	23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14.04.23.
	황병헌	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14.04.23.
	김세종	30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지방법원 판사	15.02.27.
검찰	김현아	33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14.02.12.
	오기찬	34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14.02.12.
변호사	범현	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0.08.20.
	최진녕	3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11.07.18.
교수/ 전문가	강수진	24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3.05.16.
	김혜정	해당없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0.08.20.
	노수환	24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5.16.
	박지선	해당없음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14.07.25.
	이진국	해당없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1.05.16.
	최준혁	해당없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13.08.20.

3. 자문위원

【2015. 4. 27. 현재】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경력	최초 위촉일
학 계	박 은 정	52. 10. 0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 10.
	손 동 권	52. 11. 30.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원 혜 옥	62. 07. 28.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광 석	58. 07. 2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 계	오 미 영	58. 03. 22.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
	조 벽	56. 11. 14.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
	홍 은 희	55. 07. 05.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언론계	김 세 형	54. 01. 24.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
	정 동 식	58. 01. 25.	경향신문 부사장	”
시민, 사회단체	김 자 혜	51. 11. 01.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정 춘 숙	64. 01. 08.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IV. 2015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1. 제5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 지원

- 제5기 양형위원회는 출범 직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운영지원단은 양형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지원, 양형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제5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지원
-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2015년 6월 완료)
 - 양형기준 설정 작업 시작에 따른 양형자료조사 (2015. 7. ~ 8.)

2. 『2015 양형기준』 책자 발간·배포

- 2014 양형기준 책자 발간 이후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장물,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과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설정된 모든 양형기준을 담은 『2015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2015. 6. 각급 법원, 검찰, 국회 등에 배포 예정

3. 『2014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2014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및 2015년도 활동계획을 담은 『2014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배포 예정

V.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64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

정안

나.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문 화 재 청	안전기준과장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8		법 무 부	검찰국장
9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10		안 전 행 정 부	법무담당관
11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2	연 구 기 관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3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4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5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7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8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9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0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1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5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26		참 여 연 대	사범감시센터
27		한 국 Y M C A 전 국 연맹	사무총장
28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15. 5. 4. ~ 2015. 5. 22.
- 의견조회 취합 : 2015. 5. 22.
- ※ 의견조회 결과는 위원회 제65차 회의 시 보고 예정